

##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2023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는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전형 중 또는 전형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필수 입력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사실에 대한 서류증빙불가, 사실과 다른 경력기재, 유효하지 않은 자격증 및 허위·위조서류 제출 등으로 판명될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면접전형 면접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제척·기피·회피 사유(시험 응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고지받았으며, 이에 해당하는 면접관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지원자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 및 제55조의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임용의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면접 중 또는 면접 후에도 문제유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채용 중 취득, 취득한 회사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유출 및 누설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생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귀하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상기 결격사유는 임용 전만 아니라, 임용 후에도 해당함이 드러나는 경우 「인사규정」 제54조(당연 퇴직)에 의거하여 당연퇴직함

**제5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자가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받은 때
  2. 직위 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7. 영리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하였을 때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15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10.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때
  11. 채용비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필요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